

다부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주도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발전방안*

차 장 현** · 강 태 호*** · 김 대 수*** · 이 호 찬****

〈요 약〉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주제어 : 화생방 테러, 테러 대응, 협력체계 강화

* 본 논문은 2018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및 핵·WMD방호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송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주저자)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제24화생방특수임무대대 (공동저자)
**** 육군사관학교 물리화학과, 핵·WMD방호연구센터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의 변화 III. 화생방테러 공동협약체 구성 및 기대효과 IV. 결 론

I. 서 론

대테러센터가 인용한 RISK ADVISORY GROUP의 2018년 테러위협보고(<https://www.riskadvisory.com/campaigns/terrorism-political-violence-risk-map-2018/> (최종 검색 : '19. 1. 9))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테러위협수준 5단계 중 4단계의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보다 높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김정남 테러가 발생했던 말레이시아(3단계) 뿐만 아니라 도쿄 사린테러가 발생했던 일본(2단계)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방정보본부의 2018년 1월 참고보고(국방정보본부, 주요 테러단체 관련 참고사항, 2018, p.1)에 따르면 2012년 결성된 알 누스라 전선 등 8개 조직 78,000여 명이 국제 테러조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IS의 경우 2015년 9월 대한민국을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군’으로 지칭했고, 2016년 2월에는 우리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로부터 매우 안전하다 볼 수 없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후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배경(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해설, 2017, pp.3-6)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

UN 대테러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에게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한 입법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 하는 등 국제적인 요구가 있었다. 끝으로 국내 테러대응 활동의 기본지침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보완을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의 입국 시 단순 퇴거 등 기본적인 조치만을 허용하였으나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 테러선동·선전물 삭제 요청권 등 보다 적극적인 권한(「테러방지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이 부여되어 능동적인 대테러 안전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주목할 변화 중의 하나는 화생방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던 화생방테러를 폭발물, 총기테러와 같은 국내일반테러사건의 하나의 유형으로 지정하여 기존 일반테러사건 대응 구조처럼 화생방테러 발생 시에도 경찰 주도로 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기존의 환경부·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계기관은 경찰청을 지원하는 화생방테러 대응지원본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사후복구 등 화생방테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독기관(경찰)으로서의 대응보다는 경찰을 지원하는 환경부·질본·원안위·군·소방 등 전문기관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 적시적인 전문 인력 및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화생방테러 발생 전 관할지역에 지원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기능부서(출동팀)와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경찰청 기준 年 1~2회 실시하는 화생방 대테러 합동 훈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주관의 지역테러대책협의회만이 제한적인 교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찰-관계기관의 화생방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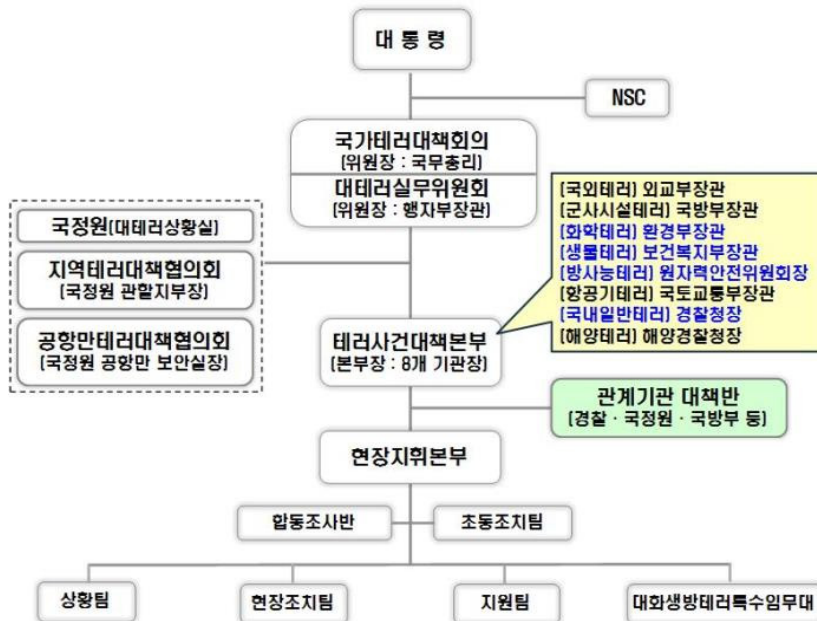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기초 작업으로서 “Ⅱ.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의 변화”에서 「테러방지법」 전·후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경찰 및 관계기관의 역할을 확인하고 미국·영국 등 유사사례를 통해 보완요소를 확인하며, “Ⅲ. 화생방테러 공동협의체 구성 및 기대효과”에서는 경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案) 방안 제안 및 그 기대효과를 분석 제시하였다.

II.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의 변화

1. 테러방지법 제정 前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

화생방테러를 포함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는 관련 법령(지침)에 의해 구성되며, 「테러방지법」 제정 전에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등 크게 3가지 지침이 국가대테러활동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1981년 88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 범국가적인 대테러능력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테러대책회의·대테러실무위원회 등 필요조직 신설, 테러 사건 진압부대 창설, 그리고 각 부처별 대테러 기능 부여의 근거가 되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2004년 7월 제정되어 국가위기 유형을(안보(14), 자연재난(7), 사회재난(27)) 구분하여 각각의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작성·관리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지침은 주로 적의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1〉 「테러방지법」 제정 전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도

위 지침에 근거한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도 및 기관별 역할은 그림 1(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테러」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2, p.12, 현대해리,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선일 피살사건 및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22, 필자 재구성) 및 표 1(황용재, “국내 화생방테러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7, p.60)과 같다. 기존 체계는 테러가 발생하는 장소(국외·국내·군사시설·해양·항공기)와 유형(화학·생물·방사능)에 따라 경찰청 등 8개 기관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하며, 현장에 현장지휘본부를 구성하고 소방·구급 등 필요한 기능은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건을 대응한다. 화생방테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각각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찰은 경찰통제선 설치, 현장통제 등 초동조치 및 테러범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1〉 테러사건대책본부 주무기관별 대응 사건

구 분	주무 기관	대응 사건 내용
국내일반 테러	경찰청	인질·점거, 납치·암살, 폭탄·무장공격 등
화학테러	환경부	유독성 화학물질 살포, 유독물질의 상수원 투입 유독물질 제조·저장시설 폭파 등
생물테러	보건 복지부	다중이용시설·환경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병원체 살포 우편물 등을 이용한 특정대상에 대한 병원체 살포
방사능 테러	원안위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 또는 핵물질 탈취 운송중인 핵물질 탈취 또는 운송시설 공격 오염폭탄(Dirty bombs)에 의한 방사능 물질 살포 등
항공기 테러	국토 교통부	항공기 납치·인질극 항공기·공항시설에 대한 폭파 또는 무장공격 등
해양테러	해양 경찰청	해양에서의 인질·점거 선박폭파 또는 무장공격 등
군사시설 테러	국방부	군사시설에 대한 폭파·습격 또는 軍인사 납치·암살 등
국외테러	외교부	재외국민 납치·인질극 또는 살해 재외공관 또는 아국 시설에 대한 테러공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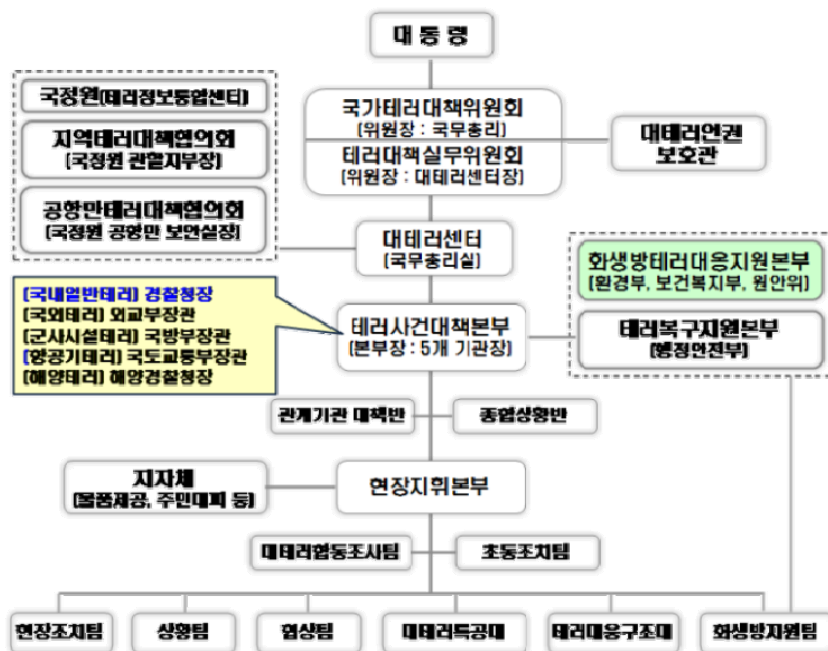
화생방 테러사건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확산 방지와 더불어 테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검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에서는 환경부 등의 관계기관은 화생방 피해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는 대응활동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고, 수사는 지

원 관계에 있는 경찰이 테러사건 (합동)수사본부 등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대응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는 현장 지휘의 관계기관과 수사 전담의 경찰과의 이원적인 관계로 사건을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2. 테러방지법 제정 後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

1) 변화된 체계 및 보완점

「테러방지법」 제정 후 가장 큰 변화는 화생방테러를 기존 총기·폭발물·인질테러와 같은 국내일반테러로 지정하여 경찰이 주무기관으로서 관계기관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軍·해경 등), 테러대응구조대(소방), 대 화생방 테러 특수 임무대(軍)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통제 한다” 에 나와 있듯이, 화생방테러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관계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림 2〉 「테러방지법」 제정 후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도

그림 2(경찰청, 현장지휘관용 테러대응 매뉴얼, 2017, p.11)와 표 2(표 1을 참조하여 재구성)는 기존 8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발생 장소에 따라 5개의 사건대책본부로 간결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화생·방 유형의 구분이 사라지고, 화생방 테러가 국내일반테러로 규정되고, 경찰이 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와 테러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던 기존의 이원화 체계가 단일화 된 체계로 변화 되었다.

〈표 2〉 테러사건대책본부 주무기관별 대응 사건

구 분	주무기관	대응 사건 내용
국내일반 테러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질·납치, 암살, 폭발물 테러, 시설물 점거 •유해화학물질 살포·병원체 및 독소 살포· 방사능 물질 살포 등 화생방 물질을 이용한 테러 행위 등
항공기 테러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납치(불법억류) •항공기·공항시설에 대한 폭파 또는 무장공격 등
해양테러	해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에서의 인질·납치 •선박 및 해상구조물 점거·충돌·파괴 등
군사시설 테러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시설에 대한 폭파·습격 •軍인사 납치·암살 등
국외테러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 납치·인질극 또는 살해 •재외공관 또는 아국 시설에 대한 테러공격 등

기존의 환경부·질본·원안위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에게 전문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즉,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테러사건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다소 어색한 역할에서 벗어나, 기관의 원래 취지에 맞게 화생방 전문기술조언, 오염 확산 방지,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배치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 지휘계통인 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초동조치팀의 유기적이고 단일화된 지휘통제 아래, 기술적인 역할을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테러대응구조대 등의 전담조직에 맡길 수 있게 필요시 추가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기관들의 임무와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실제 화생방테러 사건의 예방 및 현장대응활동에 있어 ‘유사시 관계기관과 어

떻게 정보공유 및 협력대응을 할 것인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충돌 시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박재풍 외.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경찰청 연구보고서, 2016, pp.107, 179-191) 정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의 화생방 테러대응체계 비교 및 시사점

효과적인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단계인 ‘예방-대비-대응-사후복구’의 ‘예방’ 단계에서부터 주무기관인 경찰과 이를 지원하는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사전 협력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응체계를 보유한 미국·영국의 사례를 국내와 정리·비교한 표이다.

〈표 3〉 미국·영국·한국 화생방테러대응 체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한국
테러대응 체계	연방정부 중심 대응 (연방-주-지방 3단계 세분)	중앙정부 대응	중앙정부 대응
주관기관	법무부·FBI	경찰주도 전략적 조정그룹	경찰청
참여기관	재난관리청·국방부·에너지부·환경보호청 등	내무부·국방부·보건부 등	소방·환경부·보건복지부·원안위 등
관련근거	애국법(PATRIOT Act) 자유법(FREEDOM Act) 정부 간 국내 테러 활동 계획 개념	국가비상관리법	테러방지법
사건지휘	경찰주도 통합본부	경찰주도 지역범위 전략적 조정그룹	경찰청 테러사건대책본부
상설 협력체계 구축정도	높음	중간	낮음

※ 美. 경찰주도 전략적 조정그룹(Strategic Co-ordinating Group): 국가비상관리법에 의해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화생방테러 포함)이 여러 부처의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 내무부, 국방부, 보건부 등 각 부처의 필수 고위관료들이 참여

(1) 미국

미국의 경우 화생방테러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복잡하게 이뤄져있는 대응단계별 정부부처의 협력, 같은 단계의 각 부서별의 상호 협력을 위

한 의사소통 및 유기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본부를 구성하는 각 관계 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능별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관 간 업무수행의 중복도를 감소시키며 통합본부내의 혼란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발간한 ‘화생방사건 처리 기준에 관한 국가전략(A National Strategy for CBRNE Standards)’보고서에서도 복잡한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정부 및 관계기관간의 상설 공조 등을 통한 장비, 교육훈련, 매뉴얼의 통합화 등 화생방테러 대응의 표준화를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1 A National Strategy for CBRNE Standard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Homeland and National Security).

(2) 영국

영국에서는 화생방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주도하는 전략적 조정그룹이 사건의 전반적 지휘를 맡고, 지역 실정과 환경에 정통한 관계기관들이 이를 지원하는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적 조언, 사후복구를 위해 전략적 조정그룹 내 하위 그룹들을 설치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강화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합동조사결정 모형을 이용해 다부처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합리적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되고 있다. 즉, 각 기관별 매뉴얼에 기관의 임무만을 나열하는 우리와는 달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호 업무의 중복성을 감소시키고, 관계기관별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대응체계에서도 경찰주도하 관계기관들과의 충돌방지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일본 및 독일

일본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관계기관 상호간 공동훈련을 통해 각 기관별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하여 중복요소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생방 테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주도하 관계기관들이 경찰을 지원하며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테러 발생 전 평소부터 실질적인 공동훈련등을 통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발생 시 기관별 업무 중복과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일본과 같이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경찰조직에서 평소부터 확보하고 있기에는, 인력운영과 교육면에서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테러대응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테러 대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여 그 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대등한 지위의 협력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테러센터’라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조직, 특히 경찰과 정보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은 우리의 테러대응 조직에서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각국 사례의 공통점을 찾으면 여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생방테러 대응에 있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중요성 인식 및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된 우리나라 대응체계를 보완하는데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Ⅲ. 화생방테러 공동협의체 구성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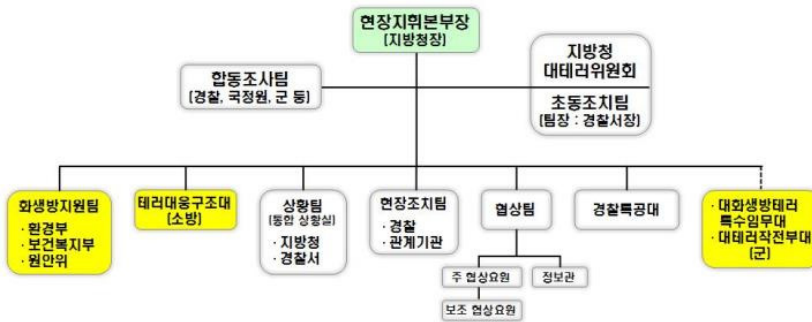
1. 경찰주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경찰은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테러방지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1조에 근거하여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초동조치팀 등을 사건대응조직으로 설치·운영한다.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테러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테러경보 “심각” 단계,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 근거, 대테러센터장이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제한적인 경우 발령하며 발령절차로는 대테러센터장이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령하되, 긴급한 경우 또는 주의 이하의 테러 경보 발령 시 심의절차 생략 가능, 경보의 단계는 테러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대책마련 및 종합대응을 위하여 경찰청 대테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설치하며 이때 사건대책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된다. 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주요 기능 및 역할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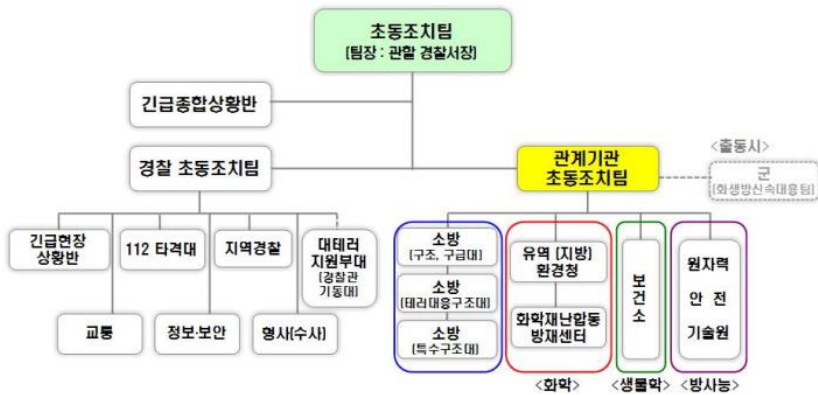
△ 국내일반 테러사건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정리 △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 실무위원회 개최 건의 △ 언론브리핑 등 대언론 활동 △ 현장지휘본부의 대응활동 지휘 및 지원 △ 관계기관과의 협조, 필요시 인력·장비 지원 요청 △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등이 있다.

현장지휘본부는 그림 3(경찰청, 현장지휘관용 테러대응 매뉴얼, 2017, p.13)과 같이 편성되는데, 일반테러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테러사건 대책본부장이 현장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지휘본부를 설치하며 현장지휘 본부장으로는 관할 지방청장을 임명 하되, 대책본부장이 별도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지휘본부의 주요 기능 및 역할로는 △ 테러의 양상·규모·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대응활동의 총괄지휘 △ 현장에 출동하는 관계기관 조직의 지휘·통제 △ 테러범 수사, 인적·물적 피해처리 △ 관계기관 지원요청 등이 있다.



〈그림 3〉 국내일반테러사건 발생 시 현장지휘본부 편성

초동조치팀은 그림 4(경찰청, 현장지휘관용 테러대응 매뉴얼, 2017, p.14)와 같이 편성되며 화생방 테러사건 발생 초기부터 테러사건대책본부설치 전까지 초동조치 및 지휘·통제 임무를 담당하고 그 팀장으로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주요 임무로는 △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 관계기관의 지원요청 △ 그밖에 사건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그림 4〉 국내일반테러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팀 편성

현장지휘본부와 초동조치팀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찰 및 다수의 관계기관 지원팀이 합동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현장 지휘라인의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은 테러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 출동팀(타격대·기동대·특공대 등)과 더불어 환경부·질본·원안위 등 관계기관 지원팀을 동시에 지휘·통제 하여 조기에 사건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

화생방테러의 경우 각 유형(화학·생물·방사능)별 피해정도, 오염범위 및 피해 양상 등이 달라 신속한 초동조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경찰이 다수의 관계기관들을 사건 초기부터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는 단일 기관만으로는 테러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인 경찰과 지원기관의 총력적인 합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행 테러방지법에 근거한 화생방 테러 대응체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찰주도하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에 대해 “우리 경찰의 대응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의 체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남궁현 외, “경찰의 화생방테러 대응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찰청 연구보고서, 2017, pp.106-111). 그러나 현재는 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의 현장지휘관이 출동하는 각 관계기관의 능력·인원·장비 등을 완벽히 이해하여 지휘하기에는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력 정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결국 화생방테러가 국내일반테러로 포함되어 대응 주체가 경찰로 바뀌었으나, 경찰 내 화생방테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화생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제기관과의 의사충돌

이 일어나는 경우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화생방 테러 사건의 주관기관인 경찰과 지원기관인 관계부처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경찰주도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 신설을 제시하고 한다. 이 협의체는 상황발생 이후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테러 발생 전에도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평소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실제 테러 상황발생시 정보유통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는 효과적인 합동 대응을 보장할 수 있다.

2. 협의체 구성 안(案)

협의체의 설치·운영목적은 화생방 테러대응 주관기관인 경찰과 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 등 지원기관과의 사전 협력강화와 정보공유를 체계를 상설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 현장에서 모든 기관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한다. 협의체는 「테러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상 나와 있는 전담조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등 10개 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구성이 가능하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안(案)은, 중앙부처 단위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와 지역 단위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지역협의체」이다.

먼저, 중앙부처 단위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의 구성 기관으로는 테러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에 편성 및 지원관계에 있는 9개의 기관을 선정하였다. 테러사건 발생 시 협력·조정 기능의 대테러센터, 현장의 주체가 되는 경찰청, 화생방 각 유형별 전문기관인 환경부·질본·원안위,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 필요시 경찰을 지원하는 군(軍) 화생방 관련 부대(합참 화생방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그리고 대테러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을 포함하였다. 이는 국가 화생방 대테러 체계를 수행함에 있어 예방·대비·대응·사후복구 기능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림 5〉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 편성(案)

현재 대테러센터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협의체로는 각 지역별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와 정보관리를 하는 테러정보 통합센터가 있으나, 현장 대응의 주체인 경찰청이 운영하는 협의체가 없다. 경찰과 전문기관이 포함되는 포괄적 공동대응 상설 협의체 설치로 기관별 사전 정보교환과 유기적 협조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화생방 테러대응이 가능해진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중앙단위 협의체와는 별도로, 지역단위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지역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하다. 중앙단위 협의체가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체계 정립, 대응전략 수립 등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정책수준에서의 활동을 한다면, 지역단위 협의체는 현장대응 중심으로 정보 교류, 매뉴얼 적용, 실제 화생방 대테러 합동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협의체 구성으로는 <그림 6>과 같이 경찰(현장지휘본부), 전문기관(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소방(테러대응구조대), 軍(지원본부), 행안부(테러복구지원본부) 산하기관, 그리고 국정원 지부 등이 편성되었다. 이는 중앙단위 협의체와의 연계, 테러방지법령상의 전담조직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기관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림 6>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지역협의체 편성(案)

중앙 협의체와는 달리 지역 협의체 구성 시 지역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는 법령상의 전담조직인 현장지휘본부-현장지원본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관을 달리 구성토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방사능관련 지역협의체 기관인 원전지역사무소가 구성기관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이며, 화학의 경우 지방경찰청의 관할지역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의 관할지역이 상이하므로 이 또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표 4>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관계기관(산하 및 소속기관 포함)의 관할 및 작전구역을 기준으로 구성한 지역 협의체의 편성안(案)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지역별 기관 간 화생방 능력, 인원·장비 현황 등 상설 정보 공유, 연간 화생방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국가 중요행사 시 화생방 대테러 합동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 질수 있다. 이로써 지역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지역 화생방 대테러 전담조직의 한축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지역별 협의체 구성(案)

구분	주관	주요 참여 기관				
		환경부	질본	원안위	소방	軍
중앙협의체	경찰청	환경부	질본	원안위	소방	軍
서울지역	서울지방 경찰청	한강유역 환경청	서울시 보건과	원자력 의학원	서울소방 안전본부	수도방위 사령부
부산지역	부산지방 경찰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국립부산 검역소	고리원전 사무소	부산소방 안전본부	53사단
대구지역	대구지방 경찰청	대구지방 환경청	대구시 보건과	-	대구소방 안전본부	2작전사
인천지역	인천지방 경찰청	시흥화학재난합 동방재센터	인천시 보건과	-	인천소방 안전본부	17사단
광주지역	광주지방 경찰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시 환경정책과	-	광주소방 안전본부	31사단
대전지역	대전지방 경찰청	금강유역 환경청	대전시 보건과	원자력 안전기술원	대전소방 안전본부	32사단
울산지역	울산지방 경찰청	울산화학재난합 동방재센터	울산시 보건과	-	울산소방 안전본부	53사단
경기남부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시흥화학재난합 동방재센터	경기도청 감염병 관리과	-	경기도 재난안전본 부	3군사
경기북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한강유역 환경청	경기도청 감염병 관리과	-	경기북부 소방재난본 부	1·5·6 군단
강원지역	강원지방 경찰청	원주지방 환경청	강원도 보건과	-	강원소방 안전본부	1군사
충북지역	충북지방 경찰청	서산화학재난합 동방재센터	충청북도 보건과	-	충북소방 안전본부	37사단
충남지역	충남지방 경찰청	금강유역 환경청	충청남도 보건과	-	충남소방 안전본부	32사단
전북지역	전북지방 경찰청	새만금유역 환경청	전라북도 보건과	-	전북소방 안전본부	35사단
전남지역	전남지방 경찰청	여수화학재난합 동방재센터	전라남도 보건과	한빛 원전 사무소	전남소방 안전본부	31사단
경북지역	경북지방 경찰청	구미화학재난합 동방재센터	경상북도 보건과	월성·한울 원전사무소	경북소방 안전본부	50사단
경남지역	경남지방 경찰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경상남도 보건과	-	경남·창원 소방본부	39사단
제주지역	제주지방 경찰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제주도 보건과	-	제주소방 안전본부	제주방어 사령부

3. 기대효과 및 소결론

앞서 논의한 협의체의 운영은 경찰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력체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한 적시적인 통합 대응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사건에 대한 기관별 자체평가가 아닌 협의체를 통한 사후평가와 환류체계를 통해 가용자원의 효율성, 대응절차 그리고 기관별 역할에 대한 합동검토와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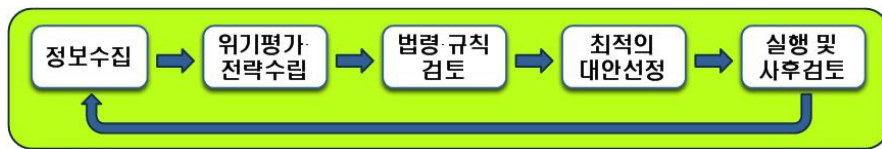
〈표 5〉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기대효과

구 분	현재(As-Is)	향후 방향(To-Be)
주무 기관	경찰청	경찰청
상설협의체	없 음	공동대응 협의체
화생방테러 예방가능	각 기관별 예방 활동 수행	협의체를 통한 포괄적 예방 활동 수행
정보 공유	관련기관별 수집, 제한적 공유	관련기관별 수집 후 협의체 공유
현장 대응	사건발생 시 일시적 통합대응	지역별 상설 공동대응 협의체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가능
사후 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협의체를 통한 통합 사후평가 및 환류

상설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정례화를 위한 관련규정의 수립, 다부처 의사결정 방법의 정립, 합의·도출된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내 전담조직 지정 등의 개정 또는 국무총리령 등 별도의 운영규정 수립을 통해 반기 1회 등 정구적인 운영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외에 국가 중요행사 개최, 관계기관의 요청 시 등에도 유연하게 운영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이때 기존의 국가정보원 지역 관할지부의 장 중심인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와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국정원 중심의 협의회로 그 소속기관들이 법무부·검찰청·국토부·경찰청 대테러 담당 공무원 및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경비 보안책임자 등 공무원 및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안건의 범위는 매우 폭넓으나 관계기관 대응체계·인원/장비 편성·정보공유 등 실제적으로 현장대응에 필요(비밀에 준한)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는 화생방테러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책임기관인 경찰청 및 지원기

관의 대테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화생방테러 대응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들의 협의가 가능하다.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위반 해결해야할 또 다른 문제는 다부처 간의 합동 의사결정모형을 공유하여,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7>에 화생방테러의 효과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모델 활용을 통해 다부처 간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취합하여 화생방테러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를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 각 기관들의 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이때 평소 합동 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면, 협의체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7> 협의체 합동의사 결정 모델

이러한 모델을 통해 각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통합된 하나의 통합 매뉴얼을 제작 및 검토할 수도 있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매뉴얼들은 각 부처의 중점사항, 임무, 조직, 장비 등을 중심으로 유형별 중복되게 작성되고 있어, 실제 현장대응에 필요한 부처 간 협조사항, 중복 임무에 관한 조정 방안 등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들은 합동의사 결정 모델을 통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기관별 화생방테러 대응매뉴얼(규정)

기관	보유 매뉴얼(규정)	테러유형별 대응내용		
		화학	생물	방사능
경찰청	•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
환경부	• 화학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
질 본	• 생물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
원안위	• 방사능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
소방청	• 테러유형별 현장표준소방활동지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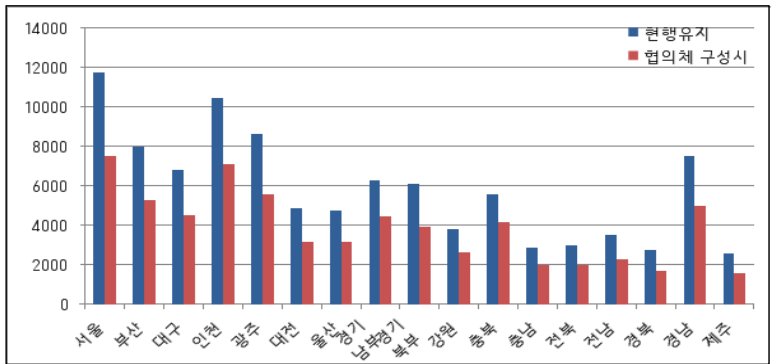
상설협의체 운영의 또 다른 기대효과는 상설 협의체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많은 노력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다. <표 7>은 경찰 대테러 주요업무 별 소요시간을 정리한 표('17.1.1~'17.12.31간 경찰청 대테러과에서 전국 50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주요 대테러 업무(행정, 상황관리, 집체교육, FTX, 시설점검 등)의 문건과 소요 시간을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됨)이다. 이 중 관계기관의 공문처리 등 대테러 행정이 연간 29,191시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위해 전체 노력의 약 34%를 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협의체(案) 구성 시 경찰 대테러 주요업무 별 예상 소요시간

구 분	행정	상황관리	집체교육	FTX	시설점검	기타근무	합계
소요시간	29,191	10,874	1,712	10,103	18,963	28,421	99,264
업무 비율	29.4%	11.0%	1.7%	10.2%	19.1%	28.6%	100%
협의체 구성시	14,645	9,786	1,198	7,072	13,274	19,894	65,821
업무계수	0.5	0.9	0.7	0.7	0.7	0.7	0.663

※ 업무계수는 실제 경찰 대테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 등 6개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소요된 문건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수로서 협의체 구성시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산출됨

협의체의 상설 운영은 이러한 불필요한 노력을 줄여 다른 테러대응 활동과 치안 현장의 추가적인 투입으로 이어져 전반적 대테러업무 효율 증대를 가져오며, 관할 구역의 대테러 안전성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지역 협의체를 병행하여 구성 시 그림 8(전국 50개 주요 경찰서(서울(3), 부산(3), 대구(3), 인천(3), 광주(3), 대전(3), 경기남부(3), 경기북부(3),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3), 경북(3), 경남(3), 제주(2)) 대테러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표-7의 업무계수 적용 시 지역별 업무 시간과 문건을 고려하여 판단된 자료임)에서 볼 수 있듯 서울 36%, 제주 39.2% 등 지역별로 25~39% 가량 대테러 주요업무의 소요시간이 절약됨을 볼 수 있다.



〈그림 8〉 지역 협의체 구성 시 지방청별 대테러 업무 소요시간 변화

그밖에도, 협의체의 상설운영은 관계기관별 화생방테러 관련 가용자원 D/B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의 현대화를 이루고, 대테러 연합훈련 통합 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이 가능케 할 것이다.

테러는 문화, 사상 그리고 정치 등 다양한 비정형적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 수단 역시 발생 후 분석 전까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제한된다. 이런 특성 아래서 주도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나 특정 기관의 주도만으로 대응 할 경우 지나친 정형성에 갇혀 적시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는 테러를 살아 숨 쉬는 생물을 다루듯 비정형화된 형태의 테러를 정형화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IV. 결론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과거의 테러양상과 달리 美 9.11 테러, 이집트 시나이호텔 자살폭탄 테러 등과 같이 무차별적 공격을 통한 대량사상자의 발생이 수반되는 형태이며 그 공격방법도 갈수록 잔인해져가고 있다. 테러의 목적인 공포심 조장과 테러 집단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 각인을 위해 더욱 잔인해져 가는 현대의 테러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내외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의 발생은 없었

으나,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피살사건 등을 통해 서 볼 때 한국(인) 역시 테러 위협으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우방을 유지한 채 중동, 아프리카 등에 군을 파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슬람 과격 집단 등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회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장소별 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을 간결화, 일원화하여 국내사건의 경우 경찰이 주도하도록 그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17년 화학무기인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 더욱 잔인해지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비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테러 양상에 비춰볼 때, 사건 발생 시 관계 기관별 유기적인 대처가 강도 높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찰”, “소방” 등 ‘기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유관기관들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와 유사한 구조인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대응체계 분석을 통해 테러사건을 주관하는 경찰과 그 지원기관인 각 부처 간의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파악하였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협의체를 상설기구로서 지정·운영한다면 국내에 실제 화생방테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부처 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제시한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가 상설기구로서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 운영 근거로는 협의체 구성 기관 간 MOU 체결, 국무총리령의 협의체 운영규정 신설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 협의회처럼 테러방지법령상 전담조직의 하나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다부처 및 그 산하기관을 규정짓는 데 가장 합리적이다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을 계기로 국가 화생방테러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 조직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화생방테러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테러방지법 개선입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7). 현장지휘관용 테러대응 매뉴얼.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12). '테러'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2017). 테러방지법 해설.
- 남궁현 외 (2017). 경찰의 화생방테러 대응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찰청.
- 박원규, 박재풍 (2018). 독일의 대테러 법제·조직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18(1), 82-83.
- 박재풍 외 (2016).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경찰청.
- 현다해리 (2013).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선일 피살사건 및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웅재 (2007). 국내 화생방테러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24 Regional and Emergency coordinators, 29. Consultation with developed administrations. "22C Terrorism".
- CONPLAN U.S. (2001). Government Interagency Domestic Terrorism Concept of Operations Plan.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1). A National Strategy for CBRNE Standard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Homeland and National Security.

3. 기타자료

- RISK ADVISORY GROUP 홈페이지. <https://www.riskadvisory.com>
- 국가 비상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 <https://www.legislation.gov.uk>
- 국방정보본부, 주요테러단체 관련 참고사항(18.1.18.) (국방인트라넷 화생방테러정보 페이지, <http://www.mnd.mil/user/indexMain.action?siteId=cbmti>)
- 대통령령 제27203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2016.
- 대통령령 제309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2013.5.21. 일부개정)
- 법률 제14071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2016.
- 정부 간 국내테러활동 계획 개념(U. S Government Interagency Domestic Terrorism Concept

of Operations Plan. <https://www.hsd.org/?abstract&did=781818>)

총리령 제1281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규칙. 2016.

【Abstract】

Study on Police-led National Response against CBRN Terror by Strengthening the Standing Cooperation System of the Interagencies

Cha, Jang-Hyeon · Kang, Taeho · Kim, Daesoo · Lee, Hochan

Nowadays, Terrorism has become bloodier. Unlike the past, the recent terrorism has been indiscriminate in the purpose of mass- killing. Given this aspect, the threat of a CBRN attack is the biggest one to modern society. Notab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s in Korea by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such as ISIL is higher than ever in consideration of its allusion; crusades and the devil's allied forces.

To overcome these circumstances,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counter terrorism at the state level including anti-terrorist legislation. Under the anti-terrorist act, police have to lead relevant inter agencies when it comes to the CBRN terror. At first glance, current countermeasures would work well. However,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he standing cooperations system of related departments need to be set up.

In this sense, this article proposed a coagulatory body that could not only consider institutional-oriente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response but also integrate and operate functions of various specialized institutions. It also stressed that the council should move toward a consultative body of information gathering, distribution and working- level consultation. With this cooperation system, counter-terrorism agencies can respond rapidly, stop wasting their effort and assets by about 30%. Also, they could design the atypical aspect of terrorism into standardized.

Keywords: CBRN terror, Counter Terrorism, Strengthening the Standing Cooperation System